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09)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기본공제 대상 확대 (김승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3

I. 개요

1.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7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20.
- (3) 회 부 일 : 2024.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충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충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기본공제 대상 확대 (김승수 의원안, 조인철의원안)

현 행	김승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 소득기준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u>500만원</u> 이하(총 급여액 <u>8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총 급여액 <u>800만원</u>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u>200만원</u>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총 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총 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부양가족

* 김승수의원안 2024. 11. 21. 제출(의안번호 5709), 조인철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37)

☐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승수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현행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되 그 대상 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고(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5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조인철 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소득금액 기준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2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700만원→ 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둠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급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인당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 기본공제 금액 및 기준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대비 2023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33%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기본 공제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기준(100만원)은 199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금액 수준이며, 총급여액 기준은 2015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이후 누적물가상승률이 33%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기본 공제액 및 소득기준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및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본공제액 상향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3년 기준 33%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33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또한, 기본공제액의 경우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데,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기본공제액의 상향의 효과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공제 적용 대상자는 2,078만 9,197명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은 57조 1,035억 7,5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것임.

또한, 2023년도 약 56조 4,000억원, 2024년 약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금액
종합소득	11,475,485	26,977,166
근로소득	20,789,197	49,317,645

자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3-1-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통계연보(4-2-2), 국세통계포털(TASIS)

문 의 처

02)6788-5158